



FTA 품목분류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Trend)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품목분류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1차 WCO HS위원회 최신사례 포함-

양영미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Trend) “스마트 기기(Smart Device)”의 품목분류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1차 WCO HS위원회 최신사례 포함-



양영미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수출입자, 특히 FTA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보았을 것이다.

수출물품은 물론 국내 제조물품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WTO 무역원활화에 기반하고 있다보니 수출지원(환급 등)을 하는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끔 다른 나라 직원들이 물어본다. 한국은 왜 국내 제조물품까지 사전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다. 모든 원부자재를 수입하며, 이것들은 제조·조립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도 결국에는 수출에 공해지기 때문에 수출의 연속선상이라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대부분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10단위(HSK) 또는 6단위(HS)의 코드를 확정하여 회신한다.

다만 유사물품 간에 상이 사례가 있거나 재심사 등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5조 제2항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품목분류관제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 심사국장)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제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 심의기구로, 기재부나 농림부·식약처와 같은 관련부처는 물론, 공공 연구 기관(ETRI, 기계연구원 등)의 전문분야 연구원, 대학교수(전기·전자·기계·화학·식품 등 다양), 관세사·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 회당 보통 8~10개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짧으면 4시간 길면 5시간이 넘기도 한다.

대부분은 동일·유사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한 호로 품목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품목분류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지다 보니, 국내 사례는 물론 다른 나라와 상이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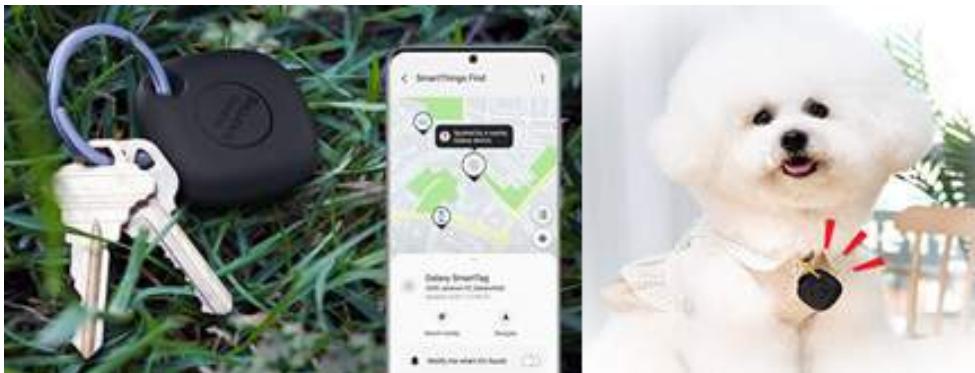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품의 등장이다.

이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 다국적 기업들이 IT 신상품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한국에 시제품을 소개하고 그 반응을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IT 기기에 대한 보급 속도도 가장 빠르고 사용자 반응(사용후기?)도 가장 열정적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IT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가 많은 편이고, 제84류·제85류 전담자인 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스마트 태그(Tag)"라 불리는 물품을 품목분류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기능은 "위치찾기" 인데 근거리 통신망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합세번은 통신기기(제8517호)인지, 음향 신호용 기기(제8531호)인지, 그 밖의 고유한 전기기기(제8543호)인지 여부이다. 10월쯤 개최될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후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림 1] 스마트 태그(Smart Tags)



출처 : Samasung Newsroom

* 분류사례 확인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자” 또는 “결정세번”란에 숫자 “85” 입력

스마트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사전에는 “똑똑하고 멋진, 맵시있는”, IT 전문사전에는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똑똑하고 인텔리전트(Intelligent) 하다고 하였으니, 딱 봐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실행 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니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 게기되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필자가 왜 이 스마트함이 부담스럽다고 했었는지 감이 올 것이다.

관세율표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는 제84류(기계)·제85류(전기기기) 두 개류(Chapter)로 되어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16부 물품들은 제2호 (부분품 분류규정)와 제3호(복합기계, 다기능 기계)·제4호(기능단위기기), 이 세가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다툼(쟁점)이다.

“기계”라고 했다가 “기기”라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잠깐 짚고 갈까 한다.

가끔 법원에서 대리인들이 호(heading)나 소호(sub-heading)의 용어가 “machine”이나 “apparatus”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사전상으로 이들의 개념은 다를 수 있고, 일반 법령(조세 법률주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HS 품목분류표(제84류·제85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생물분류체계의 “종 < 속 < 과 < 목 < 강 < 목 < 계”처럼, 류(2단위) > 호(4단위) > 소호(6단위)의 레벨은 서로 다른 류나 호의 물품간에 체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어느 호의 물품은, 다른 소호보다 물품의 범위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다른 류의 물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제16부 주 제5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machine)·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장비(equipment)·장치(apparatus)·기기(appliance)를 말한다.”

즉 서로 다 같다는 의미다. 만약 그 용어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주(note)나 HS 해설서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명시해 놓는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으로 “스마트(Smart) 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다.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상에 “스마트(Smar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물품은 딱 두 곳이 있다. ‘12년에 신설된 제8523.52호의 “스마트 카드(Smart cards)”와 ’22년 신설된 제8517.13호의 “스마트폰(Smartphones)”이다.

“스마트(Smart)”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Smartphones)”을 정의하고 있는 제85류 주5호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표 1] 스마트폰(Smartphones)의 HS 품목분류표상 정의

제85류 주 제5호 :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스마트폰'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기존 휴대폰에 퀼티(QUERTY) 자판을 결합하여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는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응답하라 2G폰" 모토로라나 애니콜, 걸리버 휴대폰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2G폰(풀더폰)과 달리,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범용 운영체제(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가 탑재되어 있고, 컴퓨터와 같이 두뇌 역할을 하는 CPU(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사용자가 스스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컴퓨터'가 분류되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에 대한 제84류 주6호 규정이나 제8471호 해설서를 보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등등 스마트폰의 소호주 정의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처음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국제적으로도 무선전화기로 분류할지(제8517호)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로 분류할지 이견이 많았다.



결국 WCO HS 위원회에서 최종 무선 전화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WCO 차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특별호 필요성을 인지하여 '22년 제8517. 13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를 제85류 주에 추가하였다.

스마트폰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8517호에 분류됨은 이견이 없다.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물품 "스마트 카드"로 넘어가겠다. "똑똑한 카드?"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카드?"

"스마트 카드"에 대한 품목분류상 정의는 제85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 스마트 카드(smart card)의 HS 품목분류표상 정의

6. 제8523호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이 류의 주 제6호 나목 참조]란
 칩 모양의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마이크로 프로세서·RAM·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스마트카드는 접속부·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덧붙여 제8523호 해설서에는 “이들 스마트카드(smart card)는 이 류의 주 제6호 나목을 충족하는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나 태그(tag)”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프록시미티 카드/태그는
 일반적으로 인쇄된 안테나에 붙여진 ROM를 갖춘 전자집적회로로 구성된다. 이 카드/태그는
 독취기로부터 송신되는 반사되는 신호에 작용하는 안테나의 영역 간섭(field interference)(ROM에
 내장된 코드의 결정에 따른 현상) 발생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태그는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단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 보자. 전면에 붙은
 사각형의 금속칩(IC)이 스마트 카드라고 생각
 하면 된다. 카드만 될까? 그렇지는 않다. 형태나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 가능! 가능이다.

제85류 주 제6호에서는 전자집적회로(IC)칩을
 내장한 카드라고 소개하면서, 자성물질이 선
 (스트라이프)처럼 입혀져 있는 마그네틱 카드나
 근거리 무선통신(안테나, 통신모듈 등)으로
 작동하는 비접촉카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능·수동 소자를 갖추어 특정기능을 하는
 기기나 통신기기 등은 안된다(경합가능한 호)는
 제외조항을 두고 있다.

보통 ‘스마트 카드’는 주기억장치(메모리)와 보조
 기억장치, CPU로 구성되어 있는 보안 프로
 세서의 일종이다. 언뜻 드는 생각이... 이름도
 스마트하고 하는 일도 제법 스마트한데 자기
 테이프나 CD가 분류되는 저장매체(제8523호)로
 분류되는게 맞아? 결이 달라 보이는데?”

사실 스마트카드는 1960년 미국 컴퓨터
 제조사인 IBM에서 개발한 마그네틱 카드에서
 출발한다. 당시 컴퓨터 저장매체로 널리 쓰이던
 자기테이프의 원리를 카드에 응용한 것이다.

카드 뒷면에 입혀진 마그네틱 선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 전기장을 만들면서 전류가
 흐르고 이것을 단말기가 읽어내어 정보를 얻게
 된다. 전형적인 제8523호의 물품이다.

마그네틱 카드는 굽기만 하면 데이터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론 공중전화카드, 철도·지하철 승차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저장공간의 한계나 보안(복제)문제, 마그네틱 손상 등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반도체 집적회로(IC)를 내장된 스마트카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컴퓨터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IC)되어 암호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물론 현재도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프트 카드나 선불카드, 일회용 주차카드 등은 여전히 마그네틱을 사용하고 있다.

이쯤되면 왜 스마트 카드가 제8523호에 등지를 틀고 있는지, 왜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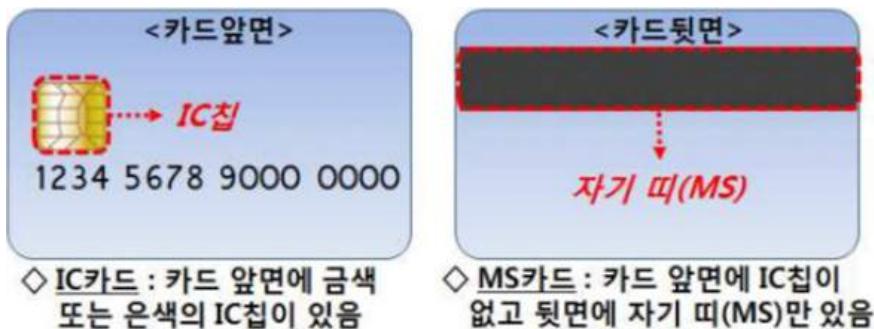
감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접촉식 카드” 외에도 통신모듈과 안테나를 내장시켜 주변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감지,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형태의 “비접촉식의 카드”도 같은 호에 분류되는데, 제85류 주 규정에서는 “프록시미티(proximity, 근접)” 용어를 쓰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파식별)” 등과 같은 개념이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카드나 태그를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귀찮아 아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에 IC 칩을 삽입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제8523호의 저장매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제85류 주 규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2] 스마트 카드와 마그네틱 카드 비교



출처 : 이데일리 기사 “ATM기에서 마그네틱 카드 사용금지”, '15.6.1.

[그림 3] IC칩(스마트 카드)가 내장된 스마트워치



출처 : 엔비토엘리먼트

“다른 종류의 능동(能動)이나 수동(手動) 회로 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형태의 카드/태그는 자료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HS품목분류표에서 “스마트(Smar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두가지 물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그럼 나머지 스마트한 기기는 도대체 어떻게 품목분류를 하라는 것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제16부 주 제3호(복합기계, 다기능기계)이나 통칙 제3호 복합물품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16부 주 제3호에는 “주된 기능”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통칙 제3호에는 “본질적 특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뭐가 다른가?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칙 제3호는 표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질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제16부(제84류·제85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주기능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즉 주된 기능을 찾으면 된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Smart) 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 등이 TV와 결합된 스마트 TV? 또는 스마트 냉장고? 그렇다고 TV나 냉장고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주기능을 판단하는데 큰 이견은 없을 듯 하다. 여기까지...

무선통신과 센서 등을 이용해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개폐하고 차량의 주차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원패스 스마트 키라면??

키(key)=열쇠? HS 품목분류표에서 열쇠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제8301호이다. 물론 비금속제가 기본이지만 전기식의 도어락도 분류는 가능하다.

다만 이 물품은 단말기가 해당 물품에 내장된 BLE 칩의 위치를 감지하여 차단기를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락(Lock), 언락(UnLock) 원리로 작동하는 열쇠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일단 우리나라는 '19년도에 제8543호(품목분류 3과-9382, 스마트 원패스 키)의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했다. 물론 본건물품에 RFID 칩 외에 별다른 능수동 소자가 없다면 앞에서 살펴 본 스마트카드(제8523호)가 우선 검토될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 칠판은?

우리나라는 '18년도에 86인치 TFT LCD(모니터)에 터치센서, 안드로이드 O/S 등이 탑재되어 글쓰기도 가능하고 화면을 통해 인터넷 접속 등이 가능한 전자칠판에 대해 제8528호(품목 분류4과-1830,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의 모니터로 분류하였다.

특대형 컴퓨터 아니야? 하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8471호로 분류한 일부 다른나라도 있다.

결론은 우리는 제8471호의 컴퓨터가 아닌 제8528호의 모니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향후 WCO HS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 다시 고민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의 대표주자인 봄에 착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워치'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이전에도 손목시계에 PDA가 결합되어 있거나 전자계산기가 결합된 형태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2010년 초반부터 사용자가 스스로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범용 운영체계(OS)가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는 IT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왔고, 2019년 이후 스위스 명품 시계를 모두 합한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었다.

시계(제9102호)의 대체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작은 집(side)과 같이 통신기능(제 8517호)도 하고 있으니, 품목분류상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실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기능들이 하나 둘씩 추가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미 '15.3월 제55차 WCO HS 위원회에서 제8517.62호의 "기타의 통신기기"로 결정된 바 있다.

제55차 WCO HS위원회 당시, 스위스는 스마트워치는 시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만약 주기능이 통신인지 시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다)에 따라 최종호인 제9102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중국, EU 등 다수의 국가들이 제8517호를 지지하면서 최종 판단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논의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전화의 송·수신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이나 재생, 사진 촬영, 만보계

등의 다른 기능도 갖고 있는 아래 3종 물품이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과거의 사례를 꺼내는 이유는 뭘까?

상기(remind) 차원에서? 아니다

모든 스마트 워치가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WCO 결정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발신번호나 부재중 전화, 문자(SMS)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워치는 대부분 제8517호에 분류해 왔다.

다만 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조한 밴드 타입(일명 값비싼 만보기라 칭하는)의 스마트 기기는 제9031호(기타의 측정기기) 등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림 4] 제55차 WCO HS위원회에서 논의된 스마트워치 3종



그럼 제71차('23.3월) WCO HSC에서 논의된 물품은 도대체 어떤 스마트워치였기에 "시계"로 분류된 것일까? 제품명은 "Polar M430"이다.

제조사는 심박계(Polar Electro, 심박계 최초 개발)나 스포츠 시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POLAR"라는 회사였고, 시장에서는 "스마트 러닝(running) 워치" 또는 "GPS 러닝(running) 워치"로 불리운다.

심박수, 신체리듬을 측정할 수 있는 일부기능이나 외형 등을 보면 제55차에 결정된 소니의 스마트 밴드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지만, 해당 제품 설명서나 판매정보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Polar M430은 심박수 측정과 고급 트레이닝 기능 탑재한 더 많은 러너(runner)를 위한 최고 수준의 GPS 시계입니다. 100개가 넘는 스포츠 프로필을 통해 개인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운동계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시간과 운동량 등 심층적 분석을 위한 하루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획한 훈련 세션도 볼 수 있습니다. Polar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 할 수도 있습니다.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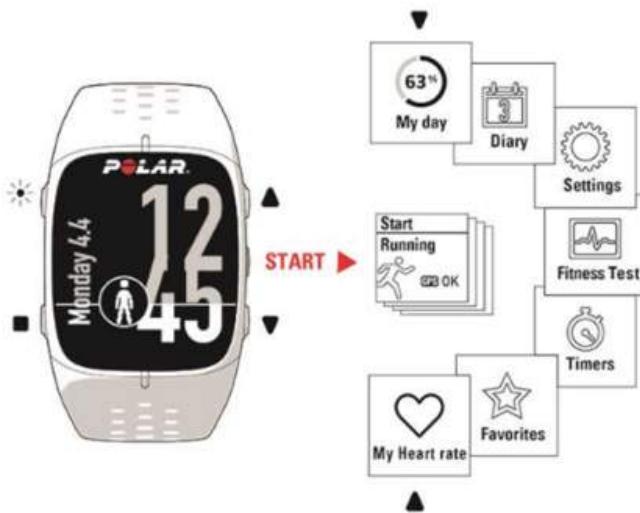
제71차 논의에서도 역시 제9102호(시계)를 주장한 스위스는, 제55차에 제8517호에 분류된 스마트 워치는 특정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 작동이 가능한 반면, 해당 물품은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림 5] POLAR KOREA, 사용설명서 발췌



[그림 6] POLAR 제품 사용설명서 발췌

메뉴로 들어가 UP(위로) 또는 DOWN(아래로)을 눌러 메뉴를 탐색하세요. START(시작) 버튼을 눌러서 선택사항을 확인하고 BACK(뒤로) 버튼을 눌러 돌아갑니다.



심박수나 운동거리 등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소니나 애플사의 스마트워치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였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이 제8517호와 제9102호를 구분 짓는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일부 국가에선 일관성 차원에서 제8517호에 함께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최종 투표결과는 제9102호 “손목 시계”로 결정되었다. 개인적으로 일부 기능이나 구성요소 등이 명쾌하게 달라 보이지는 않지만, 제품의 설계의도나 사용목적은 분명 제55차 결정된 스마트워치와는 다르다.

회의시 반론은 많았지만, 유보는 없었기에 이번 제72차('23.9월) HS 위원회에서 제71차 HS 위원회 결정을 분류의견서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쯤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로 수용될 예정이다.

“손목 위에 개인비서, 손목 위에 주치의” 등 여러 감투를 받고 있는 스마트워치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될지 모르겠지만, 진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드론과 같이 스마트워치도 특게 호(소호)를 갖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